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96
----------	-------

발의연월일 : 2026. 7. 22.

발 의 자 : 박수영 · 강승규 · 이인선
이상희 · 박충권 · 조지연
곽규택 · 김장겸 · 권영세
김석기 · 이종배 · 박성훈
김재섭 · 김민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공지능”을 “인공지능, 차세대 원자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u>인공지능</u>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나. (생략) 3. (생략) ② ~ ⑥ (생략)	-----인공 지능, 차세대 원자력----- ----- ----- ----- ----- ----- ----- ----- ----- ----- -----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